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9-56호(2009.6.24)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7-138호(2017.9.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북아현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중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가. 사 업 명 : 북아현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4번지 일대(77,839.5㎡))
- 나. 시 행 자 : 북아현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정태송)
- 다. 공고기간 : 2019.5.15. ~ 2019.5.29.
- 라. 보상협의 방법 및 대상자 권리내역

협의기간	2019.5.15.(수)~2019.5.29.(수) (10:00~17:00)							
협의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75(북아현동), 3층 ☎02-362-7064~6							
협의방법	구비서류 첨부, 협의장소 방문하여 협의 후 계약서 작성							
보상의시기·방법 및 절차	각 소유자 개별적으로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후 흠결이 없을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하며, 북아현1-1구역 재개발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소정의 지급절차에 의거 개별 계좌로 입금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2) 주민등록초본 (전 주소 이력포함). 3) 통장 사본 1통.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통. 5) 인감도장. 6) 사업자등록증 지참.							
보상대상 권리내역	소재지	지번	상호	보상종류	수량	보상금액	성명	주민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87-18	사랑의원	휴업보상	1식	245,425,000	최상훈 김은호	720501- 47032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합사무실 (02-362-7064~6) 또는 서울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 (02-330-879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